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지청장 허훈
전화 055-350-4301 / 팩스 055-350-4684

보 도 자 료

2022. 11. 30.(수)

제 목 **경쟁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제3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현직 군수 등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☑ 사건관계인이 공적(公的)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,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,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 제2호)

- 오늘(11. 30.) 창원지검 밀양지청(지청장 허훈)은 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(무소속)의 지지표 분산을 목적으로 지인으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하도록 하여 공천을 받게 하고,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현직 창녕군수 A를 불구속 기소하였음

-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,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 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,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형해화하고,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사례임

- 검찰은 앞으로도 공명선거풍토를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고,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
1	A (현 창녕군수)	○ '22. 3.~6. B와 공모하여, 경쟁 후보자(무소속)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C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입당하여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후, 그 대가로 C 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, 3회에 걸쳐 합계 1억3,000만원을 제공하여 **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[공직선거법위반]**
		○ '20. 10. 17. F, G와 공모하여,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, 선거구민 G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여 **기부행위·사전선거운동 [공직선거법위반]**
2	B 구속 (사업가)	○ '22. 3.~6.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C의 특정 정당 입당·공천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C 등 3명에게 3억원 제공을 약속하고, 합계 1억3,000만원을 제공하여 **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[공직선거법위반]**
3	C 구속 (행정사)	○ '22. 3.~6. 위와 같이 A의 당선 목적으로 C의 정당 입당·공천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B로부터 1억원씩 합계 3억원을 제공받기로 하고, 합계 1억3,000만원을 수령하여 **선거인 매수 [공직선거법위반]** ○ C는 위와 같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아들의 계좌에 입금·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**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**
4	D 구속 (승려)	
5	E 구속 (사업가)	
6	F (전 군의원)	○ '20. 10. 17. A와 공모하여,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, A가 창녕군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여 **제3자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[공직선거법위반]**
7	G (기자)	

2 주요 수사 경과

○ '22. 6. 7. 경남지방경찰청, 고발장 접수받아 수사

○ '22. 10. 27. 경남지방경찰청, B~E 4명 구속

○ '22. 11. 4. 경남지방경찰청, A~E 등 6명 송치

○ '22. 11. 4.~29. 검찰, 금융거래·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

○ '22. 11. 23. 검찰, B~E 4명 구속 기소

○ '22. 11. 30. 검찰, A, F, G 3명 불구속 기소

3 범행 경과

○ A와 경쟁후보자 甲(전 창녕군수)은 같은 정당 소속이었으나, 선거를 앞두고 A의 공천과 甲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었고, A는 당시 현직 군수였던 甲과의 양자구도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

○ 이에 A와 사업가 B는 甲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 C를 ○○당에 위장 입당, 공천되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·제공하였음

○ D는 ○○당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창녕군수 후보 공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후 C를 소개하였고, C는 기존 정당에서 탈당 후 ○○당에 입당하여 공천을 신청했으며, E는 자신의 사무실을 C의 선거사무실로 제공하는 등 C, D, E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음

○ C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직후 지역언론이 '위장 입당, 선거인 매수' 의혹을 제기하자, C는 공천 후 불과 5일 만에 사퇴하였고, 그 이튿날부터 C, D, E는 B와 접촉하여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합계 1억3,000만원을 수수함

○ 그밖에, A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,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음

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,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 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,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형해화하고,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사례임

○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현직 창녕군수의 가담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, 상대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받았던 C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추가 인지하고,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음

※ A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

○ 검찰은 앞으로도 공명선거풍토를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,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